|  |  |  |
| --- | --- | --- |
| **《회계인원 계속교육규정》에 관한 통지**  재회[2013]18호  중공중앙 직속기관사무관리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 해방군총병참부, 무장경찰부대총병참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회계인원의 계속교육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의 과학화, 규범화,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질이 뛰어난 회계집단을 육성하여 회계인원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고, 회계인원이 계속교육방식 및 신(新)수단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당국이 2006년 11월에 발표한《회계인원 계속교육규정》(재회[2006]19호) 유관내용을 수정하였다. 수정 후의 《회계인원 계속교육규정》을 발표하는 바, 이를 적용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첨부파일：회계인원 계속교육규정  　　재정부  　　2013년 8월 27일  **회계인원계속교육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회계취업자격증서를 소지한 인원(이하 ‘회계인원’)의 계속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의 과학화, 규범화,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질이 뛰어난 회계집단을 육성하고, 회계인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이하‘《회계법》)’및《회계취업자격관리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회계인원 계속교육의 관리는 동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회계인원 계속교육은 경제사회발전 및 회계산업의 발전 요구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강화하고, 품질을 중시하는 회계인재집단의 구축을 전면적으로 촉진하며, 경제사회 및 회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재확보 및 지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은 아래에 열거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1) 이민위본(以民爲本),안수시교(按需施教). 회계산업의 발전추세 및 회계인원취업의 기본요구를 파악하여, 회계인원의 전문능력을 제고시키고 회계인원이 새로운 지식 및 기능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2) 중점부각, 능력제고. 회계인원 계속교육은 회계인원의 전체적인 소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회계인원의 지식구조를 개선시킨다.  (3) 지도강화, 혁신메커니즘. 전면적인 계획을 전제로, 각 방면의 교육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사회교육단위의 회계인원 계속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계속교육 내용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계속교육 방식의 혁신을 이룬다. 계속교육 정보를 통합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며, 정부부문의 계획지도, 사회단위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고용주의 회계인원 계속교육을 지원 및 감독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제5조** 회계인원은 계속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및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제6조** 회계인원 계속교육은 회계취업자격을 취득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회계취업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자격을 취득한 이듬해부터 계속교육에 참가해야 하며, 규정시간 내에 규정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제2장 관리체제**  **제7조** 재정부가 책임지는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 계획의 제정  (2)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 제도 제정  (3)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 중점 초안작성  (4)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중점 교재의 개발 및 추천  (5)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사 양성 훈련 조직  (6) 각 지역 및 유관부문에서 전개하는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의 지도 및 감독  **제8장** 각성, 가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이하 ‘성급재정부문’)이 책임지는 동 지역 회계인원 계속교육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제도에 근거하여, 동 지역의 회계인원 계속교육실시방법 제정  (2)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규정 및 중점작업에 근거하여, 동 지역의 회계인원 계속교육계획 제정 및 전개  (3) 동 지역의 각급 재정부분 회계인원 계속교육관리작업의 구체적인 직책 및 권한 확정  (4) 동 지역의 회계인원 계속교육에 적합한 교재 추천, 또는 재정부의 통일적 조직개발 선용, 전국회계인원 계속교육 중점교재추천  (5) 동 지역 회계인원의 계속교육훈련 및 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사 양성훈련 조직  (6) 동 지역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 회계인원 계속교육훈련시장의 규범화  (7) 회계인원의 계속교육 현황에 대한 감독 및 감찰  **제9조** 중공중앙 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가기관 사무관리국, 중국인민해방군 총병참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총병참부(이하 ‘중앙주관단위’)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은 회계취업자격관리체제에 근거하여, 각각 재경중앙단위, 중국인민해방군계통,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계통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회계인원계속교육의 조직실시작업을 책임진다.  중앙주관단위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은 회계인원 계속교육 직책을 관리하고, 동 방법 제 8조를 참고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10조** 회계인원 소재단위는 동 단위 회계인원 계속교육 참여를 조직하고 감독한다.  회계인원 소재단위는 교육, 평가, 상호결합사용 원칙을 준수하여, 동 단위 회계인원의 계속교육 참여를 조직하고 지원하며, 학습시간을 보장하여 학습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 3장 내용 및 형식**  **제11조** 회계인원의 계속교육 내용에는 주로 회계이론, 정책법규, 업무지식, 기능교육훈련 및 직업윤리 등이 포함된다.  (1) 회계이론계속교육은 회계기초이론 및 응용이론을 강화하고, 회계인원의 이론지도실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2) 정책법규계속교육은 회계법규제도 및 기타 관련 규정제도의 훈련을 강화하고, 회계인원이 법에 근거하여 회계작업에 종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3) 업무지식 및 기능훈련 계속교육은 단위직무 수행 시 갖춰야 하는 회계준칙제도 등 전문지식, 내부통제, 회계정보화 등 방면을 강화하고, 회계인원의 실제 작업능력 및 업무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4) 직업윤리 계속교육은 회계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회계인원의 직업윤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제12조** 회계인원은 동 방법에서 규정한 계속교육 형식에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인원 계속교육의 형식은 주로 아래와 같다.  (1)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이하‘계속교육관리부문’ )이 조직한 회계인원의 계속교육 교사자격 훈련, 직장외교육훈련, 원격 네트워크 회계 교육에 참여  (2) 계속교육관리부문이 발표한 회계인원계속교육기구가 조직한 직장외교육훈련, 원격네트워크 회계훈련에 참여  (3) 계속교육관리부문이 발표한 회계인원소재단위가 조직한 직장외교육훈련, 원격네트워크 회계훈련에 참여  (4) 재정부가 조직한 전국 회계지도자 인재 훈련에 참여  (5) 재정부가 조직한 대중형 기업과 사업 단위가 조직한 총 회계사 소질 향상 훈련에 참여  (6) 성급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이 조직한 고급회계인재 훈련에 참여  (7) 중국 공인회계사 계속교육 훈련에 참여  (8) 교육관리부문이 조직한 기타 형식의 교육에 참여  계속교육관리부문은 관리권한에 따라,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 또는 회계인원 소재 단위 명칭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14조** 동 방법 제 13조에서 규정한 계속교육 형식 이외에, 회계인원 계속교육의 형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재정부가 조직한 전국 회계지도자 인재시험 및 성급 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이 조직한 고급회계인재시험에 참여  (2) 회계 및 심계(감사)전문기술자격시험, 공인회계사, 공인자산평가사, 공인세무사 시험에 참여  (3) 국가교육행정주관부문이 인정한 회계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  (4) 계속교육기관부문 또는 그 인가한 회계학술단체의 회계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국내 통일 간행물(CN)상의 경제관리 류(类)에 회계류 논문 발표  (5) 회계서적 공개출판  (6) 성급이상 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이 조직 또는 인가한 회계 지식 대회에 참여  (7) 계속교육 관리부문이 인가한 기타 형식  **제15조** 회계인원 계속교육내용은 회계인원의 취업요구에 근거하여 강의, 연구, 사례, 모의실험, 체험 등 교육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시켜 교육의 효과 및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16**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적극적으로 인터넷 교육, 원격교육, 시청각교육등의 방식을 보급하여 회계인원 계속교육 수업 및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4장 학점관리**  **제17조** 계속교육에 참여한 회계인원은 학점제 관리제도를 준수하여, 매년 계속교육에 참여하여 취득해야 하는 학점이 24학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회계인원이 계속교육에 참여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국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8조** 회계인원이 동 방법 제 13조 규정의 계속교육 형식에 참여한 경우, 계속교육학점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교육관리부문이 조직한 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사 훈련, 직장외교육훈련, 원격네트워크 회계훈련에 참여하고, 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한 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2) 계속교육관리부문이 발표한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가 조직한 직장외교육훈련, 원격네트워크 회계훈련에 참여하고, 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한 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3) 계속교육관리부문이 발표한 회계인원 소재단위가 조직한 직장외교육훈련, 원격네트워크 회계훈련에 참여하고, 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한 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4) 재정부가 조직한 전국회계지도자 인재훈련에 참여하고, 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한 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5) 재정부가 조직한 대중형 기업과 사업 단위의 총회계사 소질 향상 공정훈련에 참여하고, 시험 또는 심사에 합격한 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6) 성급 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조직의 고급회계인재 교육에 참여한경우,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7) 중국의 공인회계사가 계속교육에 참여한 경우, 소속된 공인회계사협회의 확인을 거쳐, 매 교시를 1학점으로 환산한다.  **제19조** 회계인원이 동 방법 제 14조 규정의 계속교육형식에 참여한 경우, 계속교육 학점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부가 조직한 전국회계지도자인재 시험 및 성급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이 조직한 고급회계인재 시험에 참여하여 합격한 경우, 24학점으로 환산한다.  (2) 회계, 심사전문기술자격시험 및 공인회계사, 공인자격평가사, 공인세무사 시험에 참여한 경우, 매 과목 시험 통과시, 24학점으로 환산한다.  (3) 국가교육행정주관부문이 인정한 회계류 전문 학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하고 당해년도 1개 과목의 시험 또는 심사를 통과한 경우, 24학점으로 환산한다.  (4) 독립적으로 계속교육관리부문 또는 그 인가한 회계학술단체의 회계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후, 매 연구과제는 24학점으로 환산한다. 타인과 합작하여 완성한 경우, 각 연구과제의 제1저자는 24학점으로 환산하여 주며, 기타 저자는 각각 12학점으로 환산해 준다.  (5) 국내 통일 간행물상의 경제관리류 간행물에 회계류의 논문을 독립적으로 발표한 경우, 각 논문은 24점으로 환산한다. 타인과 합작으로 발표한 경우, 각 논문의 제1저자는 24학점으로 환산하여 주며, 기타 저자는 각각 12학점으로 환산해준다.  (6) 독립적으로 공개 출판한 회계서적은 각각 24학점으로 환산하며, 타인과 합작하여 출판한 경우, 각 회계서적의 제1저자는 24학점으로 환산하여 주며, 기타 저자는 각각 12학점으로 환산해준다.  (7) 성급이상 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이 조직하거나 그 인가한 회계류 지식대회에 참여하여 합격하거나 상을 받은 경우, 24학점으로 환산한다.  회계인원이 계속교육에 참여하여 취득한 학점은 모두 당해년도에 유효하며,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제20조** 회계인원이 성급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관할범위 간에 전임등기 처리 시, 규정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1) 회계인원이 규정에 따라 이전년도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이전년도에 이어서 계속교육을 전출지에서 이수해야만, 회계취업자격의 전임수속이 가능하다.  (2) 회계인원이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전출지에서 그 전임등기표에 명시하고, 회계인원이 전입지에서 당해년도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21조** 회계인원이 계속교육관리부문에서 발표한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조직이 전개하는 회계인원 계속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계속교육사항의 등기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회계인원이 계속교육관리부문이 발표한 회계인원소재단위가 전개한 회계인원 계속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교육사항의 등기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5장 기구관리**  **제22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의 구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분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보완 협력하며,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질서 잡힌 회계인원 계속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회계인원 계속교육은 국가회계학원, 중화회계통신 교육 학교, 회계학회, 총회계사협회,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재정부문 및 중앙주관단위회계인원 훈련기지(센터) 등 교육지원의 메인채널을 충분히 발휘하여, 고등교육, 과학연구기관 등 단위가 회계인원 계속교육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및 독려해야 한다.  **제23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는 동시에 아래에 열거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훈련작업에 상응하는 교육장소 및 교육시설을 보유  (2) 훈련작업에 상응하는 교사집단 및 관리역량 보유  (3) 완벽한 교육훈련계획, 관리제도 및 기타 관련제도의 제정  (4) 맡은 교육임무의 완성, 교육훈련의 품질 보장  (5) 유관법률규정에 부합  **제24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는 회계인원 계속교육 계획 및 작업 중점등에 근거하여, 훈련방식을 개선하고, 과학적으로 훈련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교육관리를 강화하여 교육수준 및 훈련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25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는 완벽한 회계인원 계속교육 훈련 문서를 갖추어야 하며, 실제 상황을 근거로 회계인원 계속교육 현황을 기재하고, 훈련 종료 후, 즉시 유관 상황을 소재지 계속교육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교사 및 교재**  **제26조** 회계인원 계속교육 기구의 교육인원은 양호한 직업윤리 함양, 비교적 높은 정책이론, 견실한 기초전공지식 및 일정한 실무경험을 갖춰야 하며, 현대교육훈련이론 및 방법을 파악하고, 교육 및 연구개발작업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제27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 계속교육의 교재 제작을 강화하여 회계인원 계속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재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제28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교재는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을 상호 결합하여 제작하고, 교재개발의 목적성 및 실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재개발의 사회화를 제창하여,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부문 및 단위가 통일된 회계인원 계속교육 계획 및 작업중점 등에 근거하여, 회계인원 계속교육교재 편성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제29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 계속교육교재의 편집, 평가, 추천, 출판, 발행, 사용상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30조** 어떤한 부문, 단위 및 개인도 회계인원에게 회계인원 계속교육 교재를 강매하거나 끼워팔 수 없다.  **제7장 감독 및 점검**  **제31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관리는 등기제도를 실시한다.  회계인원의 계속교육사항의 등기를 처리 할 시, 아래의 두 가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회계인원이 계속교육에 참여하여 시험 및 평가를 통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회계취업자격증 및 관련 증명자료를 지참 후, 계속교육관리부문소속에서 계속교육사항 등기를 진행한다.  (2)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관 또는 회계인원 소재 단위에 보고한 회계인원 계속교육정보에 근거하여 회계인원이 계속교육사항등기를 처리하도록 한다.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취업 당안 정보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회계인원이 받은 계속교육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제32조** 회계인원이 병가, 경외작업, 출산 등의 원인으로 당해 년도에 계속교육 규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리적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속교육관리부문의 비준확인을 거친 후, 취득하지 못한 계속교육학점은 다음해에 취득하도록 연기 할 수 있다.  **제33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회계인원 계속교육현황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하고, 감독 및 점검결과를 모범 근로자에 참여하는 회계인원에 대한 평가, 회계인원 명예증서 발급 등의 근거 중 하나로 삼는다.  규정에 따라 계속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속교육에 참여하였으나 규정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회계인원에 대해 계속교육관리부문은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제34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정기적으로 소재지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관을 점검 및 평가한다.  **제35조** 회계인원 계속교육기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허위, 사기 등 부정당한 수단을 통한 학생유치  (2) 회계인원 계속교육명의로 공금하여 경내외 여행을 조직 조직 또는 기타 과도한 소비활동을 전개  (3) 국가유관규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회계인원 계속교육관련 훈련증서 발급  (4) 회계인원 계속교육 명의로 불법요금 또는 훈련과 관련 없는 비용의 수취  **제36조** 계속교육관리부문은 각단위회계인원의 계속교육현황을 《회계법》 실시현황점검, 회계취업자격현황점검의 내용으로 삼는다.  **제8장 부 칙**  **제37조** 성급재정부문, 중앙주관단위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은 동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안하도록 한다.  **제38조** 동 방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재정부는 2006년 11월 20일 발표한 《회계인원계속교육규정》（재회〔2006〕19호）는 동시에 폐기한다. |  | **关于印发《会计人员继续教育规定》的通知**  财会〔2013〕18号  中共中央直属机关事务管理局，国家机关事务管理局，解放军总后勤部，武警部队后勤部，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加强会计人员继续教育管理，推进会计人员继续教育工作科学化、规范化、信息化，培养造就高素质的会计队伍，提高会计人员专业胜任能力，适应会计人员继续教育方式、技术手段等新变化，在广泛调查研究的基础上，我部对2006年11月印发的《会计人员继续教育规定》（财会〔2006〕19号）有关内容进行了修订。现将修订后的《会计人员继续教育规定》印发你们，请遵照执行。  　　附件：会计人员继续教育规定  　　财政部  　　2013 年8月27日  **会计人员继续教育规定**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持有会计从业资格证书人员（以下简称会计人员）继续教育的管理，推进会计人员继续教育工作科学化、规范化、信息化，培养造就高素质的会计队伍，提高会计人员专业胜任能力，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以下简称《会计法》）和《会计从业资格管理办法》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会计人员继续教育的管理适用本办法。  **第三条** 会计人员继续教育应当紧密结合经济社会发展和会计行业发展要求，统筹规划，强化服务，注重质量，全面推进会计人才队伍建设，为经济社会和会计行业发展提供人才保证和智力支持。  **第四条** 会计人员继续教育工作应当遵循下列基本原则：  　　（一）以人为本，按需施教。把握会计行业发展趋势和会计人员从业基本要求，突出提升会计人员专业胜任能力，引导会计人员更新知识、拓展技能，提高解决实际问题的能力。  　　（二）突出重点，提高能力。会计人员继续教育面向会计人员，全面提高会计人员整体素质，进一步改善会计人员知识结构。  　　（三）加强指导，创新机制。在统筹规划的前提下，有效利用各方面教育资源，引导社会办学单位参与会计人员继续教育，并不断丰富继续教育内容，创新继续教育方式，整合继续教育资源，提高继续教育质量，逐步形成政府部门规划指导、社会单位积极参与、用人单位支持督促的会计人员继续教育新格局。  **第五条** 会计人员享有参加继续教育的权利和接受继续教育的义务。  **第六条** 会计人员继续教育的对象是取得会计从业资格的人员。  　　取得会计从业资格的人员，应当自取得资格的次年开始参加继续教育，并在规定时间内取得规定学分。  **第二章 管理体制**  **第七条** 财政部负责全国会计人员继续教育管理的下列事项：  　　（一）制定全国会计人员继续教育规划；  　　（二）制定全国会计人员继续教育制度；  　　（三）拟定全国会计人员继续教育工作重点；  　　（四）组织开发、评估、推荐全国会计人员继续教育重点教材；  　　（五）组织全国会计人员继续教育师资培训；  　　（六）指导、督促各地区和有关部门开展会计人员继续教育工作。  **第八条**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以下简称省级财政部门）负责本地区会计人员继续教育管理的下列事项：  　　（一）依据全国会计人员继续教育制度，制定本地区的会计人员继续教育实施办法；  　　（二）依据全国会计人员继续教育规划和工作重点，制定本地区会计人员继续教育计划并组织实施；  　　（三）确定本地区各级财政部门会计人员继续教育管理工作的具体职责和权限；  　　（四）组织推荐适合本地区的会计人员继续教育教材，或者选用财政部统一组织开发、推荐的全国会计人员继续教育重点教材；  　　（五）组织本地区会计人员继续教育培训和会计人员继续教育师资培训；  　　（六）指导、监督本地区会计人员继续教育工作，规范会计人员继续教育培训市场；  　　（七）监督、检查会计人员接受继续教育情况。  **第九条** 中共中央直属机关事务管理局、国家机关事务管理局、中国人民解放军总后勤部、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后勤部（以下简称中央主管单位）和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应当按照会计从业资格管理体制，分别负责中央在京单位、中国人民解放军系统、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系统和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会计人员继续教育的组织实施工作。  　　中央主管单位和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管理会计人员继续教育的职责，比照本办法第八条执行。  **第十条** 会计人员所在单位负责组织和督促本单位的会计人员参加继续教育。  会计人员所在单位应当遵循教育、考核、使用相结合的原则，鼓励、支持并组织本单位会计人员参加继续教育，保证学习时间，提供必要的学习条件。  **第三章 内容与形式**  **第十一条** 会计人员继续教育的内容主要包括会计理论、政策法规、业务知识、技能训练和职业道德等。  　　（一）会计理论继续教育，重点加强会计基础理论和应用理论的培训，提高会计人员用理论指导实践的能力；  　　（二）政策法规继续教育，重点加强会计法规制度及其他相关法规制度的培训，提高会计人员依法从事会计工作的能力；  　　（三）业务知识和技能训练继续教育，重点加强履行岗位职责所必备的会计准则制度等专业知识、内部控制、会计信息化等方面的培训，提高会计人员的实际工作能力和业务技能；  　　（四）职业道德继续教育，重点加强会计职业道德的培训，提高会计人员职业道德水平。  **第十二条** 会计人员可以自愿选择参加本办法规定的继续教育形式。  **第十三条** 会计人员继续教育的形式主要有：  　　（一）参加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中央主管单位、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以下简称继续教育管理部门）组织的会计人员继续教育师资培训、会计脱产培训、远程网络化会计培训；  　　（二）参加继续教育管理部门公布的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组织的会计脱产培训、远程网络化会计培训；  　　（三）参加继续教育管理部门公布的会计人员所在单位组织的会计脱产培训、远程网络化会计培训；  　　（四）参加财政部组织的全国会计领军人才培训；  　　（五）参加财政部组织的大中型企事业单位总会计师素质提升工程培训；  　　（六）参加省级财政部门、中央主管单位、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组织的高端会计人才培训；  　　（七）参加中国注册会计师继续教育培训；  　　（八）参加继续教育管理部门组织的其他形式培训。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按照管理权限，定期公布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或会计人员所在单位名称等相关信息。  **第十四条** 除本办法第十三条规定的继续教育形式外，会计人员继续教育的形式还包括：  　　（一）参加财政部组织的全国会计领军人才考试，以及省级财政部门、中央主管单位、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组织的高端会计人才考试；  　　（二）参加会计、审计专业技术资格考试，以及注册会计师、注册资产评估师、注册税务师考试；  　　（三）参加国家教育行政主管部门承认的会计类专科以上学位学历教育；  　　（四）承担继续教育管理部门或其认可的会计学术团体的会计类研究课题，或在有国内统一刊号（CN）的经济管理类报刊上发表会计类论文；  　　（五）公开出版会计类书籍；  　　（六）参加省级以上财政部门、中央主管单位、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组织或其认可的会计类知识大赛；  　　（七）继续教育管理部门认可的其他形式。  **第十五条** 会计人员继续教育内容应当根据会计人员的从业要求，综合运用讲授式、研究式、案例式、模拟式、体验式等教学方法，提高培训效果和质量。  **第十六条**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积极推广网络教育、远程教育、电化教育等方式，提高会计人员继续教育教学和管理的信息化水平。  **第四章 学分管理**  **第十七条** 会计人员参加继续教育采取学分制管理制度，每年参加继续教育取得的学分不得少于24学分。  　　会计人员参加继续教育取得的学分，在全国范围内有效。  **第十八条** 会计人员参加本办法第十三条规定的继续教育形式，继续教育学分计量标准如下：  　　（一）参加继续教育管理部门组织的会计人员继续教育师资培训、会计脱产培训、远程网络化会计培训，考试或考核合格的，每学时折算为1学分；  　　（二）参加继续教育管理部门公布的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组织的会计脱产培训、远程网络化会计培训，考试或考核合格的，每学时折算为1学分；  　　（三）参加继续教育管理部门公布的会计人员所在单位组织的会计脱产培训、远程网络化会计培训，考试或考核合格的，每学时折算为1学分；  　　（四）参加财政部组织的全国会计领军人才培训，考试或考核合格的，每学时折算为1学分；  　　（五）参加财政部组织的大中型企事业单位总会计师素质提升工程培训，考试或考核合格的，每学时折算为1学分；  　　（六）参加省级财政部门、中央主管单位、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组织的高端会计人才培训，考试或考核合格的，每学时折算为1学分；  　　（七）参加中国注册会计师继续教育培训，经所属注册会计师协会确认的，每学时折算为1学分。  **第十九条** 会计人员参加本办法第十四条规定的继续教育形式，继续教育学分计量标准如下：  　　（一）参加财政部组织的全国会计领军人才考试，以及省级财政部门、中央主管单位、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组织的高端会计人才考试，被录取的，折算为24学分；  　　（二）参加会计、审计专业技术资格考试，以及注册会计师、注册资产评估师、注册税务师考试，每通过一科考试，折算为24学分；  　　（三）参加国家教育行政主管部门承认的会计类专科以上学位学历教育，通过当年度一个学习科目考试或考核的，折算为24学分；  　　（四）独立承担继续教育管理部门或其认可的会计学术团体的会计类研究课题，课题结项的，每项研究课题折算为24学分；与他人合作完成的，每项研究课题的第一作者折算为24学分，其他作者每人折算为12学分；  　　（五）独立在有国内统一刊号的经济管理类报刊上发表会计类论文的，每篇论文折算为24学分；与他人合作发表的，每篇论文的第一作者折算为24学分，其他作者每人折算为12学分；  　　（六）独立公开出版会计类书籍的，每本会计类书籍折算为24学分；与他人合作出版的，每本会计类书籍的第一作者折算为24学分，其他作者每人折算为12学分；  　　（七）参加省级以上财政部门、中央主管单位、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组织或其认可的会计类知识大赛，成绩合格或受到表彰的，折算为24学分。  　　会计人员参加继续教育取得的学分，均在当年度有效，不得结转下年度。  **第二十条** 会计人员在省级财政部门、中央主管单位、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管辖范围之间办理调转登记时，未按规定完成继续教育的，应当分情况进行处理:  　　（一）会计人员未按规定完成以前年度继续教育的，应当在调出地完成以前年度继续教育后，才能办理会计从业资格调转手续。  　　（二）会计人员未按规定完成当年度继续教育的，调出地应当在其调转登记表中予以注明，会计人员办理调转后，应当在调入地完成当年度继续教育。  **第二十一条** 会计人员参加未经继续教育管理部门公布的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组织开展的会计人员继续教育，继续教育管理部门不为其办理继续教育事项登记。  　　会计人员参加未经继续教育管理部门公布的会计人员所在单位组织开展的会计人员继续教育，继续教育管理部门不为其办理继续教育事项登记。  **第五章 机构管理**  **第二十二条**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加强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建设，构建分工明确、优势互补、布局合理、竞争有序的会计人员继续教育体系。  　　会计人员继续教育应当充分发挥国家会计学院、中华会计函授学校、会计学会、总会计师协会、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和中央主管单位会计人员培训基地（中心）等教育资源的主渠道作用，鼓励、引导高等院校、科研院所等单位参与会计人员继续教育工作。  **第二十三条** 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必须同时符合下列条件：  　　（一）具备承担培训工作相适应的教学场所和教学设施；  　　（二）拥有与承担培训工作相适应的师资队伍和管理力量；  　　（三）制定完善的教学培训计划、管理制度和其他相关制度；  　　（四）能够完成所承担的培训任务，保证培训质量；  　　（五）符合有关法律法规的规定。  **第二十四条** 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应当根据会计人员继续教育规划和工作重点等，改进培训方式，科学设置培训内容，加强教学管理，提高教学水平，保证培训质量。  **第二十五条** 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应当建立健全会计人员继续教育培训档案，如实记载会计人员继续教育情况，并在培训结束后及时将有关情况报送所在地继续教育管理部门。  **第六章 师资与教材**  **第二十六条** 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的教学人员，应当具有良好的职业道德修养、较高的理论政策水平、扎实的专业知识基础，有一定的实际工作经验，掌握现代教育培训理论和方法，具备胜任教学、科研工作的能力。  **第二十七条**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加强会计人员继续教育教材建设，逐步形成会计人员继续教育教材体系，以适应会计人员继续教育的需要。  **第二十八条** 会计人员继续教育教材的建设应当坚持开发与利用相结合，加强教材开发的针对性和实用性。提倡会计人员继续教育教材开发社会化，鼓励社会上有能力的部门和单位按照统一的会计人员继续教育规划和工作重点等，参与编制会计人员继续教育教材。  **第二十九条**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加强对会计人员继续教育教材的编写、评估、推荐、出版、发行、使用情况的管理和监督。  **第三十条** 任何部门、单位和个人不得向会计人员强行推销、搭售会计人员继续教育教材。  **第七章 监督与检查**  **第三十一条** 会计人员继续教育管理实行登记制度。  　　会计人员办理继续教育事项登记，可以通过以下两种途径：  　　（一）会计人员参加继续教育经考试或考核合格后，应当在3个月内持会计从业资格证书、相关证明材料向所属继续教育管理部门办理继续教育事项登记；  　　（二）继续教育管理部门根据公布的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或会计人员所在单位报送的会计人员继续教育信息，为会计人员办理继续教育事项登记。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会计人员从业档案信息系统，如实记载会计人员接受继续教育情况。  **第三十二条** 会计人员由于病假、在境外工作、生育等原因，无法在当年完成继续教育取得规定学分的，应当提供合理证明，经继续教育管理部门审核确认后，其没有取得的继续教育学分可以顺延至下一年度取得。  **第三十三条**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加强对会计人员继续教育情况的监督与检查，并将监督、检查结果作为会计人员参加先进会计工作者评选、颁发会计人员荣誉证书等的依据之一。  　　对未按规定参加继续教育或者参加继续教育未取得规定学分的会计人员，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责令其限期改正。  **第三十四条**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定期对所在地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进行检查、评估。  **第三十五条** 会计人员继续教育机构不得有下列行为：  　　（一）采取虚假、欺诈等不正当手段招揽生源的；  　　（二）以会计人员继续教育名义组织境内外公费旅游或者进行其他高消费活动的；  　　（三）违反国家有关规定擅自印发与会计人员继续教育相关培训证书的；  　　（四）以会计人员继续教育名义乱收费或者只收费不培训的。  **第三十六条** 继续教育管理部门应当将各单位会计人员继续教育情况作为《会计法》执行情况检查、会计从业资格情况检查的内容。  **第八章 附 则**  **第三十七条** 省级财政部门、中央主管单位和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可根据本办法制定具体实施办法，并报财政部备案。  **第三十八条** 本办法自2013年10月1日起施行。财政部2006年11月20日发布的《会计人员继续教育规定》（财会〔2006〕19号）同时废止。 |